

2024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2461
------	------

제출일자 : 2023. 11. 22.

제 출 자 : 금 천 구 청 장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4년 회계연도 금천문화재단 출연에 대한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 대상 : 재단법인 금천문화재단

나. 출연 필요성

- 1) 금천구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립한 금천문화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 지원
- 2) 구에서 위탁하는 대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 지원
- 3)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정책 개발 및 특색 있는 문화예술 공연, 지역축제 등의 발굴로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 증진에 기여

▶ 출연에 대한 구의회 동의 후, 2024 회계연도 사업예산(안) 심의·의결

다. 2024년 예산액

- 1) 문화재단 총 예산액 : 금8,475,324천원
- 2) 출연금 요구액 : 금7,503,541천원

3. 참고사항

가. 과목별 편성내역, 지출예산총괄(부서별)

나. 관계법령

- 1)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운영재원)

<붙임1>

수입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과 목	2024년(안)	2023년	증감	증감률
총계	8,475,324	8,396,227	79,097	1%
사업예산	8,144,807	7,930,922	213,885	3%
영업수익	8,132,807	7,918,922	213,885	3%
출연금수입	7,503,541	7,174,614	328,927	5%
관리사업수입	50,000	40,422	9,578	24%
보조금수입	479,266	636,886	△157,620	△25%
기부금수입	100,000	67,000	33,000	49%
영업외수익	12,000	12,000	0	0%
자본예산	330,517	465,305	△134,788	△29%
유보자금	330,517	465,305	△134,788	△29%
순세계잉여금	330,517	465,305	△134,788	△29%

■ **관리사업수입(붙임 1 참조)**

- 금나래아트홀 공연 관람료 및 대관 수입
- 구립도서관 임대 수입 등

※ 코로나19 완화로 인하여 문화예술시설 정상화로 관리사업수입 증가 추계

■ **예산총계주의에 의거하여 2024년에 보조금수입과 기부금 수입 반영**

(회계연도 중 보조금 및 기부금 사업비가 예산을 초과하거나 감소할 경우,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

■ **2023년 순세계잉여금 330,517천원 수입예산 반영**

<붙임2>

(단위:천원)

구분	관	항	2024년(안)	2023년	전년(증△감)	증감률
총계			8,475,324	8,396,227	79,097	1%
1.재단자체사업			7,896,058	7,692,341	203,717	3%
		대의협력(정책실)	120,749	155,434	△34,685	△22%
		정책실 운영	40,749	75,434	△34,685	△46%
		패션영화제	80,000	80,000	0	-
		재단운영(경영지원팀)	5,092,132	4,474,017	618,115	14%
		인건비	3,802,916	3,276,874	526,042	16%
		퇴직급여충당금	289,508	273,530	15,978	6%
		일반운영비	999,708	923,613	76,095	8%
		지역문화진흥사업(지역문화팀)	337,141	591,553	△254,412	△43%
		지역문화사업운영경비	20,581	12,753	7,828	61%
		2024 아트테라피	20,000	20,000	0	-
		금천하모니축제	50,000	184,000	△134,000	△73%
		우리동네오케스트라	55,000	50,000	5,000	10%
		어울샘	85,160	124,800	△39,640	△32%
		만천명월 예술인가 운영	86,400	160,000	△73,600	△46%
		지역간연계협력사업	20,000	0	20,000	순증
		지역특성화문화예술사업	0	20,000	△20,000	△100%
		기초단위문화예술교육거점구축	0	20,000	△20,000	△100%
		예술진흥사업(예술기획팀)	840,376	1,062,232	△221,856	△21%
		예술진흥 운영경비	54,223	46,243	7,980	17%
		금나이트홀 시설운영	103,556	113,020	△9,464	△8%
		금나이트홀 공연전시	461,597	498,913	△37,316	△7%
		뮤지컬 활성화 사업	0	294,056	△294,056	△100%
		금천예술활성화사업	221,000	0	221,000	순증
		금천가족공연예술축제	0	80,000	△80,000	△100%
		금천라이브	0	30,000	△30,000	△100%
		독서문화진흥사업(도서관기획팀)	903,092	832,726	70,366	8%
		독서문화 운영경비	583,159	551,142	32,017	6%
		개관연장사업비	72,549	73,853	△1,304	△2%
		북페스티벌	35,000	21,000	14,000	67%
		작은도서관	182,503	157,522	24,981	16%
		스마트도서관	29,881	29,209	672	2%

구분	관	항	2024년(안)	2023년	전년(증△감)	증감률	
총계			8,475,324	8,396,227	79,097	1%	
	독서문화진흥사업(독산도서관)		210,174	194,444	15,730	8%	
		독산도서관 시설운영	172,174	156,844	15,330	10%	
		독산 문화 프로그램	20,000	20,000	0	-	
		독산 한 책 독후감 공모전	5,000	5,000	0	-	
		독산 특화사업	10,000	10,000	0	-	
		독산 북스타트사업	3,000	2,600	400	15%	
	독서문화진흥사업(가산도서관)		134,058	143,070	△9,012	△6%	
		가산도서관 시설운영	98,058	107,470	△9,412	△9%	
		가산 문화 프로그램	20,000	20,000	0	-	
		가산 특화사업	10,000	10,000	0	-	
		가산 북스타트사업	3,000	2,600	400	15%	
		가산 헬로우코딩 사업	3,000	3,000	0	-	
	독서문화진흥사업(금나래도서관)		85,790	83,939	1,851	2%	
		금나래도서관 시설운영	42,790	41,339	1,451	4%	
		금나래 문화 프로그램	20,000	20,000	0	-	
		금나래 특화사업	10,000	10,000	0	-	
		나래랑 책이랑	10,000	0	10,000	순증	
		금나래 북스타트	3,000	2,600	400	15%	
		책꾸러미지원사업	0	10,000	△10,000	△100%	
	독서문화진흥사업(시흥도서관)		172,546	154,926	17,620	11%	
		시흥도서관 시설운영	117,946	102,326	15,620	15%	
		시흥 문화 프로그램	20,000	20,000	0	-	
		꿈꿈 프로젝트	21,600	20,000	1,600	8%	
		시흥 특화사업	10,000	10,000	0	-	
		시흥 북스타트	3,000	2,600	400	15%	
	2.보조금 및 기부금 사업비			579,266	703,886	△124,620	△18%
		보조금사업		479,266	636,886	△157,620	△25%
		보조금사업	479,266	636,886	△157,620	△25%	
기부금사업		100,000	67,000	33,000	49%		
		기부금 사업	100,000	67,000	33,000	49%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해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운영재원)

-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 사업 수익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